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2. 사업경영의 지역

이 보험의 약관에 규정한 단체에 소속하고, 장래 그 단체가 설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이하 "퇴직급여제도"라 한 다)로부터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3. 단체 및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가. 단체

이 보험에서 "단체"는 법 제13조에 의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나.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이 보험에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는 동일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속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집단으로 한다.

4. 보험종목의 세목

가. 주계약

- 금리연동형
-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 실적배당형
 - 주식형
 - · 플러스혼합형40
 - · 플러스혼합형20
 - · 플러스혼합형10
 - · 채권형

나, 부가하는 특약 : 무배당 자산관리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5. 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보험세목별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적용이율로 한다.

구분		적용이율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1년	1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2년	2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3년	3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나.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1)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계산

회사는 매월 1일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2:1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단, 적용이율은 산출된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기준이율(%)

(가)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 운용자산수익률(%) = (1 + 경과수익률)^{12/6} 1
- 투자지출률(%) = (1 + 경과지출률)^{12/6} 1

① 평균자산

해당월 직전 6개월말자산 + ∑(해당월 전월까지 월말자산 × 2) + 해당월말자산

 6×2

단, 매월말 현재 특별계정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으나,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에 투입되지 않고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중인 납입부담금은 제외

- ② 해당월(적용이율 산출시점의 직전월)부터 과거 6개월간 누적 투자수지(손익계산서) = 투자수익(대변합계 부담금수익)
 - 투자비용(차변합계 계약자적립금 전입 지급보험금 특별계정운용수수료) 단, 주주지분 이익 또는 주주의 손실보전금 제외
- (나)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지표금리(%) = (회사채수익률 ① + 국고채수익률 ② + 통화안정증권수익률 ③) / 3
 - ① 회사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무보증, 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 ② 국고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의 최종 호가수익률의 평균
 - ③ 통화안정증권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물 통화안정증 권수익률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
 - ④ 평균값은 적용개시일 기준 전월의 1일부터 15일까지의 해당수익률을 산술 평균함
 - (2)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계산

회사는 매월 1일 및 16일에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부담금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설정된 단위보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각 단위보험 규모	최저한도	최고한도
5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6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기준이율의 - 80%	기준이율의 175%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85%
3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기준이율의 195%
100억원 이상		-

(주) 최고한도 산출 이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1년 이율보증형 >

○ 지표금리(%) = (A1 + B1 + C1) / 3

A1 : 국고채(1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1: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2년 이율보증형 >

○ 지표금리(%) = (A2 + B2 + C1) / 3

A2 : 국고채(2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2: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 3년 이율보증형 >

○ 지표금리(%) = (A3 + B3 + C1) / 3

A3: 국고채(3년만기)수익률의 평균값

B3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수익률의 평균값

C1 : 통화안정증권(1년물)수익률의 평균값

(주) ① 국고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 ② 회사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 ③ 통화안정증권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물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 ④ 평균값은 적용개시일이 1일인 경우 적용개시일 기준 전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적용개시일이 16일인 경우 적용개시일 기준 전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수익률을 산술 평균함
- (3) 제'가'항의 적용이율은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해당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정 적용 한다.
- (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각각의 부담금 납입건별로 이율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 하다.
- (4)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변경전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도 상기 (3)에서 정한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 (5) 보험세목 별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 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 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한다.
- 라.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한다.
- 마.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운용지침을 따른다.

6. 부담금

가. 표준부담금

장래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한다.

나. 보충부담금

과거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한다.

다. 특별부담금

재정검증에 따른 급여지급능력 확보 등의 평가를 통해 적립금이 법규에서 정한 최소 적립금의 9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라. 일시전환부담금

퇴직보험 등 또는 이 제도 이외의 제도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7. 보험기간 및 부담금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

나. 납입기간 : 전기납

다. 수금방법 :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8. 급여의 종류

가. 급여의 종류 : 연금 또는 일시금

나. 급여의 지급 :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

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9.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추가 가입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이후 새로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자의 과실 등에 의해 미가 입한 자 중에서 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추가 가입시킬 수 있다.

나.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에 추가 가입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추가 가입일은 '가'에 의해 계약자가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에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한다.

10. 해지환급금의 지급

- 가.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
- 나.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거나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에서 운용상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기관 또는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다른 상품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금리연동형 해지환급금은 적립금 이전일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으로 한다. 단, 이율보증형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이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11. 운용관리 수수료의 지급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한다.

12. 청약서 등의 서식

- 가.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 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서식은 별첨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13.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14.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보험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 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라.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마.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5.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선정

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을 선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1)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 금리연동형

- 이윸보증형(이윸보증기가 : 1년, 2년, 3년) : 이윸보증기가별로 선정 우용
-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 주식형
 - 플러스혼합형40
 - 플러스혼합형20
 - 플러스혼합형10
 - 채권형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경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자산관리수수료,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자산관리수수료,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자산관리수수료,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다.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한 함)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 다.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부담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지급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③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① 원리금보장형(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특별계정의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 과이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금리연동형의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6.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 주식형: 순자산의 60%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주식(이하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자산은 투자적격등급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40%이 내로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운용한다. 주식은 순자산의 95%를 초과할 수 없다.
- (2) 플러스혼합형40: 주식을 순자산의 40%이내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자산은 국내투자적격등급 채권, 주식관련파생상품, 채권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한다.
- (3) 플러스혼합형20 : 주식을 순자산의 20%이내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자산은 국내투자적격등급 채권, 주식관련파생상품, 채권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80%이상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한다.
- (4) 플러스혼합형10 : 주식을 순자산의 10%이내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자산은 국 내투자적격등급 채권, 주식관련파생상품, 채권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90%이상 투자한다. 단,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한다.
- (5) 채권형: 국내투자적격등급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90%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 자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운용한다.

나.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가'의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1)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 (3)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계약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다.
- (4)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3)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바' (1) 의 ① 내지 ③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경우 "변경요구일+5 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5)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6)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1) 계약자는 부담금의 펀드별 편입비율과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자동재배분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배분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된다.
- (2)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의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 변경된 펀드자동재배분지정일부터 매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 (3)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펀드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원으로 한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 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마.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다음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 도로 한다.
 - ② (1)의 규정에 의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당해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④ ① 및 ③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 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사. 투자한도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2) 및 (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

- (1)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
- (2)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3)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이하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한다),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 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 다.
 - (2)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로서 항목 별로 아래와 같이 한다.
 - ① 펀드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구분		적립금 기준 보수율
안명 [®] 보수	주식형	0.000876712% (연 0.32%)
	플러스혼합형40	0.000602740% (연 0.22%)
	플러스혼합형20	0.000602740% (연 0.22%)
	플러스혼합형10	0.000602740% (연 0.22%)
	채권형	0.000328767% (연 0.12%)

② 펀드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구분		적립금 기준 보수율	
투자일임보수	주식형		
	플러스혼합형40	0.000684932% (연 0.25%)	
	플러스혼합형20		
	플러스혼합형10		
	채권형		
수탁보수	주식형	0.000054795% (연 0.02%)	
	플러스혼합형40		
	플러스혼합형20		
	플러스혼합형10		
	채권형		
사무관리보수	주식형	0.000027397% (연 0.01%)	
	플러스혼합형40		
	플러스혼합형20		
	플러스혼합형10		
	채권형		

(3)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특별계정 운영보수,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및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 이외

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 수준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17. 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적립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8. 계약자의 보험세목 선택 및 변경

- 가. 계약자는 '4. 보험종목의 세목'에서 정한 보험세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변경요구일+5영업일」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19. 조기이전수수료의 보험세목에의 편입

무배당 확정급여형 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협정서에서 정한 금리연동형 조기이전수수료 는 당해 보험세목 특별계정의 수익으로 편입한다.

20. 이율보증형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 나.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5. 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적용이율 보증기간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설정된 각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보험의 부담금 및 적립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다.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를 준용한다.
- 라.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 보증형 적용이율로 적용한다.

마. 이율보증기간중 계약이 해지 또는 다른 펀드로 변경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 (MVA) 적용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펀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한다.

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1년, 2년 이율보증형 >

$$MVA = \max \left[\quad 1 - \left(\frac{1+i_j}{1+i_h} \right)^{n+\frac{\varepsilon}{\eta}}, \ 0 \right]$$

○ MVA의 최대한도는 5%로 함

< 3년 이율보증형 >

$$MVA = \max \left[1 - \left(\frac{1 + i_j}{1 + i_h + 0.5\%} \right)^{n + \frac{\varepsilon}{\eta}}, 0 \right]$$

○ MVA의 최대한도는 10%로 함

%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 = 0으로 함.

- 주) ①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변경)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 간
 -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 ε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기간
 - n : 당해 보험연도의 일수(365 또는 366)
 - $2i_{j}:j$ 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③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ㅇ 잔여보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i_h = i_{h-1} + $(i_{h+1}$ $i_{h-1}) imes \epsilon'$ / $(\eta imes \eta')$
 - 잔여보증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i_h = i_{h+1}

- i_{h-1} :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 중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 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적용이율
- $-i_{h+1}$: 잔여보증기간에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 중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 나 같은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해지(변경)시점 적용이율
- $n':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 $-\epsilon':i_{h-1}$ 이율보증기간부터잔여보증기간까지의 일단위 기간

21. 기타 사항

가. 용어의 사용

이 보험에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로 한다.

나. 이 보험의 내용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